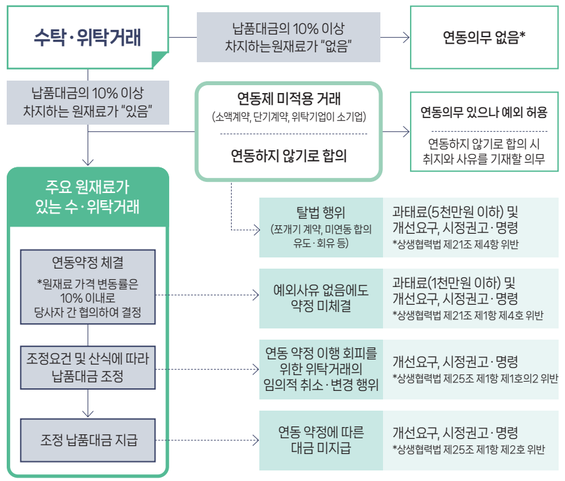
납품대금 연동절차



□ : 연동제 작동 절차 ·····→ : 위반 행위시 제재

* 단,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① 연동약정서 작성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연동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동약정서에는 법정기재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원재료 등)이 모두 포함 필수

②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조정분 산출·조정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에 대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③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④ 서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와 미연동 약정서를 상생협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3년간 구비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문의 및 상담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지역혁신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NO	담당기관	전화번호
1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942, 7948
2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7
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88
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60
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4
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4, 1145
7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8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5
9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10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50
11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1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1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1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7
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9, 8962, 8929, 8460, 8470
16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031-628-9680
17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07, 3134
18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1
19	(사)한국물가협회	02-799-0790(대표) 02-799-0808(직통)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

※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공지사항의 "납품대금연동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동제 누리집의 "온라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내 '익명제보센터'로 제보해주세요.

* 제보자의 인적 사항 및 아이피(IP) 주소를 수집하지 않으며,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최우선 보호

** 단,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적용 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중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①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③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④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시점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예시 기준시점 :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월(평균) * '기준시점'은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⑤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단, 변동률의 범위는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이 0 ~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⑥ 조정주기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⑦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⑧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⑨ 연동산식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예시 납품대금 = 직전에 적용된 납품대금+(비교시점 원재료기준가격-기준시점 원재료 기준가격)x 원재료 중량x 반영비율*(100%)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상생협력법상 벌점 경감 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6))

고환율 시대를 대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방안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고시환율을 명시하거나 납품단가 연동 산식에 환율을 산입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원재료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대비한 연동표 예시

납품대금 연동표	
❶ 납품대금 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❷ 납품대금 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❸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 고시가) ※LME고시가(원) = [전월 LME 동평균가격(USD)+프리미엄(USD)] x 환율(원/USD)
❹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❺ 조정요건	±5%이상 변동(+5% 또는 -5% 이상 변동)
❻ 조정주기	1개월
❼ 조정일	매월 1일
❽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❾ 납품대금 등 연동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기준가격 - 기준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반영비율	100%
❿ 기타 사항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이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고,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개요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수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

지원분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위·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추진체계

지원본부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연동확산 지원본부 6개 기관

전문기관 원가분석 전문기관(8개 기관)*, 컨설팅 전문기관(3개 기관)** 등
* 전문가격 조사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추며, 원가분석사·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
** 연동약정 컨설팅 수행 능력을 갖추며, 정부사업 운영 경험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



추진절차

1. **참여 신청 · 접수** — 참여기업→접수처 중 택1
2. **참여기업 요건검토** — 지원본부/전문기관
3. **전문기관 배정** — • (지원본부 접수) 전문 기관 배정 • (전문기관 접수) 해당 기관 배정
4.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 지원** — 전문기관
5. **결과보고서 확인** — 참여기업
6. **만족도 조사** — 협력재단 → 참여기업

세부 지원절차

지원분야	지원 절차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① 주요 원재료 검토를 위한 세부 서류 제출 ②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분석 ③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①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기업 방문 등) ② 연동제 대상 요건 검토 ③ 납품대금 등 연동표 작성 지원 ④ 연동약정 체결 결과 시뮬레이션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 효과

❶ 투명성을 통한 분쟁 예방
-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 유출, 영업비밀 침해 및 향후 원가절감 압박 등 원가정보 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최소화
- 위탁기업(원사업자)은 불필요한 기술탈취 의혹, 분쟁 우려 최소화 및 제3의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연동 대상 거래 구분 가능

❷ 효율성 확보
-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대상 목적물의 세부 원가 확인,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설정 등 관련 업무 수행 비용 절감
- 실무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감소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

❸ 제도 이해도 제고
-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에 관한 기업별 맞춤형 1:1 교육, 현장 질의응답 대응 등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가능

❹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업별 수·위탁(하도급) 거래 관계, 연동 대상 목적물 특성, 원재료 가격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연동 약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상시모집(단,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접수처

구분	기관명	접수처(이메일)	문의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연동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pis@win-win.or.kr	02-368-8962, 8929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aidenkim@innobiz.or.kr	031-628-9680
	중소기업중앙회	kds3437@kbiz.or.kr	02-2124-3207, 313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jjlee@kgcca.or.kr	02-6205-8121
	(사)한국물가협회	hanin@kprc.or.kr	02-799-0790(대표) 02-799-0808(직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ppurisc@kitech.re.kr	02-2183-1623
원가분석 전문기관	(재)동양경제연구원	cost@deri.or.kr	051-294-8414
	(재)청우산업발전연구원	csm@cwid.or.kr	02-6951-1591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ecost@kiba.re.kr	02-558-2045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cyj@ktei.or.kr	02-584-1092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sbs@keri.or.kr	031-776-3350
	(사)한국물가정보	wonga@kpi.o.kr	031-870-1031
	(사)한국물가협회	josa@kprc.or.kr	02-799-0790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koris1@koris.or.kr	02-785-6045
컨설팅 전문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smpark@kgcca.or.kr	02-569-8875
	한국생산성본부	jwlee@kpc.or.kr	02-724-1202
	한국표준협회	hmj1216@ksa.or.kr	02-6240-4853, 4844

* 접수처 중 택일 하여 신청서류 제출(중복 신청 불가)
** 연동지원본부 제출 시, 지원본부에서 전문기관 배정 / 전문기관 제출 시, 해당 전문기관에서 즉시 지원 예정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우수사례

귀금속 소재 가공 제조사

(신청 계기) 귀금속 산업 특성상, 은 시세는 하루에도 수차례 변동하며, 계약 체결 시점과 납품 시점 간의 가격 차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도움이 된 점) 복잡한 협상 과정을 생략하면서도 공정하고 일관된 단가 적용이 가능
(실질적 성과) 연동제 도입 이후, 수익구조의 안정화는 물론, 위탁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으로 전환

시내전화용 통신케이블 제조사

(신청 계기) 구리는 LME 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리스크가 큰 대표적 국제 원자재로 신청
(도움이 된 점) 구리 가격 급등 시 협력사를 보호하고, 가격 하락 시에는 발주사의 원가절감에 기여
(실질적 성과) 선제적으로 혁신을 추진한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며 중소 제조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